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이춘석 · 허성무
윤준병 · 김 윤 · 소병훈
박균택 · 정태호 · 김우영
한병도 · 박정현 · 김남근
이강일 · 한민수 · 임문영
최혁진 · 조계원 · 서미화
김동아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, 현장조사 우선 원칙, 의료인·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,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. 이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,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.

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는 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사례 조사에 착수하였고, 가정 내 학대 의심 사건임에도 현장조사 대신 내방면담을 실시하였으며, 의료진이나

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피신고자가 제출한 자의적 해명 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함.

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,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,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,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「의료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,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조, 제11조의2 및 제63조).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신고의무자”를 “신고의무자(이하 “아동학대신고의무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“피해아동의”를 “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1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(직접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)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의”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개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”를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전단의 기간 내에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관하여는”을 “따른 조사에 관하여는”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의 조사를 1회(아동학대

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한 조사를 횡수에 포함한다) 이상 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조사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필수조사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신고를 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
2. 피해아동의 보육·진료·교육 등에 관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, 교육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「의료법」 제19조 및 제21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.

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「의료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.

⑦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필수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조사 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피신고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3조제1항제3호의2 중 “제11조의2제1항 후단을”을 “제11조의2제3항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)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	제7조(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) ----- -----신 고의무자(이하 “아동학대신고의무자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.
제11조의2(조사)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11조의2(조사) ① ----- -----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1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(직접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)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의----- -----개시하여야 한다. -----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전단의 기간 내에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

<신 설>

<신 설>

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의 조사를 1회(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한 조사를 횡수에 포함한다) 이상 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조사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필수조사대상자”라 한

<신 설>

<신 설>

다)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신고를 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

2. 피해아동의 보육·진료·교육 등에 관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, 교육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「의료법」 제19조 및 제21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.

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「의료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·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관하여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4조,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7조, 제2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행정조사”

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.

⑦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필수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조사 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피신고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⑨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⑩ -----따른 조사에 관하여는-----

-----.

는 “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”로, “행정기관”은 “시·도 또는 시·군·구”로, “조사대상자”는 “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”으로 본다. 제6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. (생략) 3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<u>제11조의2제1항</u>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. ~ 6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63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-----<u>제11조의2제3항</u>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